



제 429 회 국 회 (정 기 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의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의무 규정 등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76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부의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의무 규정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9. 17.
3. 회 부 일: 2025. 9.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로 지방 체육, 학교 체육, 직장 체육 및 노인과 청소년 체육의 진흥을 각각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이 혼자 운동을 하기 어렵거나 체육시설과 거리가 먼 때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의 마련,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및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부의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의무 규정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제2항 신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동 방안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 개정안은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체육지도자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의3제4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0조의3(장애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동이 가능한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는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생략)	제10조의4(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현행 제10조의3과 같음)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생략)	제10조의5(합숙소의 관리) (현행 제10조의4와 같음)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생략)	제10조의6(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현행 제10조의5와 같음)

다.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 체육¹⁾, 학교 체육²⁾, 직장 체육³⁾, 노인과 청소년 체육⁴⁾

-
- 1)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2)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3)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

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 체육 진흥 필요성이 있는바, 이
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흥 시책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2010년 8.3%에서 2024년 35.2%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⁵⁾ 이를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2030년까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 달성을
목표⁶⁾로 하였음.

○ 개정안은 이러한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여러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

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
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
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
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감독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과 청소년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청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청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
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5)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10년 8.3%→'20년 24.2%→'24년 35.2%

6) 국정과제 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문체부)

□ 과제목표

○ 어디서나 운동하기 쉬운 생활체육 환경 조성으로 국민생활체육참여율 65%, **장애인 생활체육참
여율 40% 달성('30년)**

○ 스포츠 강국 위상에 맞는 체육인 복지 실현 및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

임. 다만, 안 제10조의3제3항과 관련하여 체육시설만의 별도 이동방안을 마련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규정⁷⁾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⁸⁾로서 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체육시설별로 체육시설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이동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지원수단과 중복지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시설 이용 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하고 있는바, 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교통약자콜택시) ①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등과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신부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콜택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콜택시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안 제10조의3제4항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체육 증진 및 장애인 체육지도자 활성화에 의미가 있으며, 기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체육지도자를 의무배치하도록 규정하고 개정안의 의무배치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지자체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또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사항을 노력 의무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

※ 참고자료1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 모	배치인원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1명 이상
	○ 슬로프 10면 초과	2명 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1명 이상
	○ 요트 20척 초과	2명 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1명 이상
	○ 조정 20척 초과	2명 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1명 이상
	○ 카누 20척 초과	2명 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1명 이상
	○ 말 20마리 초과	2명 이상
수영장업	○ 수영장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 수영장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2명 이상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명 이상
	○ 50타석 초과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체육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1명 이상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2명 이상
인공암벽장업	○ 실내 인공암벽장	1명 이상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1명 이상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초과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

※ 참고자료2 :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생활체육시설 현황

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15개) * 개관순 / 문화체육관광부 '25.8.기준

연번	시도	시군구	유형	시설명
1	광주	서구	다목적 체육관형	광주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2	인천	연수구	체육관 복합형	인천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3	대전	유성구	다목적 체육관형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
4	전남	여수시	다목적 체육관형	여수시장래인국민체육센터
5	전북	전주시	다목적 체육관형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6	부산	사하구	체육관 복합형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7	충북	충주시	체육관 복합형	충주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8	충남	아산시	다목적 체육관형	아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9	경남	사천시	체육관 복합형	사천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10	대구	수성구	다목적 체육관형	대구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11	경기	시흥시	체육관 복합형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12	제주	제주시	체육관 복합형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13	세종	세종시	체육관 복합형	세종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14	강원도	홍천군	체육관 복합형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15	경북	포항시	체육관 복합형	포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②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체육시설(30개) *보건복지부 '24년 발표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명	관리
1	서울	송파구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서울	은평구	서부재활체육센터	사북)엔젤스헤이븐
3	서울	강서구	기쁜우리체육센터	사북)기쁜우리월드
4	서울	노원구	동천재활체육센터	사북)동천학원
5	서울	관악구	에스알씨재활체육관	사북)에스알씨
6	서울	송파구	시각장애인축구장	송파구장애인체육회
7	서울	마포구	푸르메스포츠센터	재단법인 푸르메
8	부산	연제구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양지동산
9	대구	달서구	대구광역시달구별재활스포츠센터	전석복지재단
10	대구	수성구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국제라이온스협회356-A(대구)지구
11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12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	사회복지법인 미동
13	대전	유성구	성세체육관	사회복지법인 성재원
14	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사)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15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16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17	경기	고양시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사)홀트아동복지회
18	경기	고양시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홀트아동복지회
19	경기	안산시	명희체육센터	사회복지법인 명희원
20	경기	광명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체육관	(재)성모성심수도회
21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사단법인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
22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동암
23	전북	군산시	군산장애인체육관	지자체
24	전북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체육회
25	전북	전주시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지자체
26	전북	정읍시	곰두리스포츠센터	지자체

27	경북	구미시	구미시장예인체육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28	경북	안동시	애명체육관	애명
29	경남	창원시	창원시장예인체육관	사회복지법인범숙
30	경남	창원시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③ 반다비 체육센터 선정현황 103개소(현재 개관운영34개소 포함)

순	시도	시군구	유형	시 설 명	비 고
1	서울	송파구	체육관	곰두리(반다비) 체육센터	2020
2	부산	해운대구	종목특화	부산 반다비체육센터	2020
3	대구 (2)	중구	수영장	행복복지 국민체육센터	2019
4		수성구	수영장	수성 행복드림센터	2020
5	인천 (2)	서구	수영장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2019(개관)
6		연수구	수영장	인천 연수구 반다비체육센터	2023
7	광주 (4)	남구	수영장	광주 남구 반다비 어울림스포츠센터	2019(개관)
8		북구	수영장	광주 북구 반다비체육센터	2020(개관)
9		광산구	종목특화	광주 광산구 반다비체육센터	2023
10		광산구	체육관	광산구 반다비체육센터	2024
11	대전 (2)	유성구	수영장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2019(개관)
12		서구	수영장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2024
13	울산	남구	종목특화	울산광역시 남구 유수지 복합문화 빙상장	2020
14	세종	세종시	종목특화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2019(개관)
15	경기 (20)	가평군	체육관	조종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2019(개관)
16			체육관	설악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2020(개관)
17		김포시	수영장	김포 반다비체육센터	2020(개관)
18		광주시	체육관	광주 반다비체육센터	2021
19		동두천시	체육관	동두천 스포츠재활센터	2020(개관)
20		시흥시	체육관	시흥 반다비체육센터	2021
21		안산시	체육관	안산 반다비체육센터	2020
22		안양시	체육관	안양시 장애인 체육센터	2019(개관)
23		의정부시	수영장	의정부 반다비체육센터	2020
24		이천시	수영장	이천 반다비체육센터	2020
25			수영장	이천 반다비체육센터	2020
26		포천시	수영장	포천 반다비체육센터	2020
27		화성시	체육관	동탄2 반다비체육센터	2019
28		화성시	수영장	화성 동부 반다비체육센터	2025(개관)
29		여주시	체육관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2020
30		고양시	수영장	고양시 반다비체육센터	2021
31		양주시	체육관	양주시 반다비체육센터	2021
32		양평군	체육관	양평군 반다비체육센터	2022
33		파주시	수영장	파주시 반다비체육센터	2023
34		용인시	체육관	용인 반다비체육센터	2024
35	강원 (6)	강릉시	체육관	강릉 반다비체육센터	2019(개관)
36		화천군	체육관	화천 반다비체육센터	2020(개관)
37		속초시	체육관	속초 반다비체육센터	2022
38		춘천시	수영장	춘천 반다비체육센터	2019(개관)
39			체육관	춘천(신복읍) 반다비체육센터	2023
40		삼척시	체육관	삼척시 반다비체육센터	2024
41	충북 (7)	괴산군	수영장	괴산 반다비체육센터	2019(개관)
42			체육관	괴산군 청안 반다비체육센터	2021

순	시도	시군구	유형	시 설 명	비 고
43	충남 (15)	영동군	체육관	영동군 반다비체육센터	2019
44		옥천군	체육관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2019(개관)
45		음성군	수영장	음성 반다비체육센터	2019(개관)
46		충주시	종목특화	충주시 반다비체육센터	2023
47		보은군	체육관	보은 반다비체육센터	2025
48		공주시	체육관	공주 반다비체육센터	2020
49		금산군	체육관	금산군 반다비체육센터	2019
50			수영장	금산 추부 반다비체육센터	2024
51		당진시	수영장	합덕 반다비수영장	2019(개관)
52			체육관	당진 반다비체육센터	2020
53		보령시	체육관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2021
54		천안시	종목특화	천안 반다비체육센터	2019(개관)
55		홍성군	수영장	홍성군 반다비 수영장	2019(개관)
56		아산시	체육관	아산시 반다비체육센터	2021
57		부여군	수영장	부여군 반다비체육센터	2021
58		태안군	체육관	태안군 반다비체육센터	2022
59		논산시	체육관	논산시 반다비체육센터	2023
60		서산시	체육관	서산시 반다비체육센터	2023
61		예산군	체육관	예산군 반다비체육센터	2023
62		계룡시	체육관	계룡시 반다비체육센터	2023
63	전북 (11)	익산시	체육관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	2019(개관)
64		부안군	체육관	부안 반다비체육센터	2019(개관)
65			종목특화	부안군 반다비체육센터	2021
66		완주군	체육관	완주 반다비체육센터	2019(개관)
67		전주시	체육관	전주시 반다비체육센터	2021
68			수영장	전주시 반다비체육센터	2023
69			수영장	전주 건지 반바디체육센터	2024
70		진안군	체육관	진안군 반다비체육센터	2021
71		임실군	체육관	임실 반다비체육센터	2022
72		고창군	체육관	고창군 반다비체육센터	2023
73		남원시	체육관	남원시 반다비체육센터	2023
74	전남 (12)	고흥군	체육관	고흥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2019(개관)
75		곡성군	체육관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	2019(개관)
76		목포시	체육관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	2019
77		순천시	체육관	순천 어울림 체육센터	2020(개관)
78		신안군	수영장	신안 반다비체육센터	2020
79		해남군	수영장	해남군 반다비체육센터	2021
80		장흥군	체육관	장흥군 반다비체육센터	2022
81		영암군	체육관	영암 반다비체육센터	2022
82		강진군	체육관	강진 반다비체육센터	2022
83		담양군	체육관	담양군 반다비체육센터	2024
84		완도군	체육관	완도군 반다비체육센터	2024
85		보성군	체육관	보성 반다비 체육센터	2024
86	경북 (9)	안동시	체육관	안동 반다비 체육센터	2019(개관)
87		영주시	체육관	영주 반다비 체육센터	2019
88		성주군	체육관	성주군 반다비체육센터	2021(개관)
89		김천시	체육관	김천시 반다비체육센터	2022
90		청도군	수영장	청도군 반다비체육센터	2022
91		경주시	종목특화	경주시 반다비체육센터	2024
92		울진군	체육관	울진 반다비체육센터	2024

순	시도	시군구	유형	시 설 명	비 고
93		영천시	체육관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2025
94		포항시	종목특화	포항 반다비빙상장	2025
95	경남 (7)	거제시	수영장	거제 반다비체육센터	2019(개관)
96		고성군	체육관	고성 반다비체육센터	2020(개관)
97		김해시	체육관	김해시 반다비체육센터	2019
98		양산시	수영장	양산시 반다비체육센터	2019(개관)
99		진주시	체육관	진주시 반다비체육센터	2019(개관)
100		창녕군	체육관	창녕 반다비체육센터	2020(개관)
101		하동군	체육관	하동 반다비체육센터	2020(개관)
102	제주 (2)	서귀포시	수영장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2022
103		제주시	수영장	제주 반다비체육센터	2020